

# 제4차 산업혁명과 과세 문제

—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

이 창 규\*

---

목 차	
I. 서 론 .....	223
II. 해외 주요국의 공유경제 과세제도 분석 .....	225
1. 공유경제의 개요	
2. 해외 주요국의 공유경제의 과세 문제	
III. 우리나라에서의 공유경제 과세 방향 .....	236
1. 공유경제와 세제 문제	
2. 공유경제 과세 방안의 확립 방안	
IV. 결 론 .....	245

---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 투고일 : 2018. 3. 4. 1차수정일 : 2018. 3. 14. 게재확정일 : 2018. 3. 20.

### < 국문초록 >

공유경제(sharing economy)란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방식을 의미한다. 공유경제는 주로 개인이 보유한 활용 가능한 자산 등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른 개인 등도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혁신적인 기술이 그랬었던 것처럼 공유경제의 등장은 우리 경제와 노동 시장 등에서의 기존의 제도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아직까지 공유경제가 도입되기 위해선 세금탈루 등의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한 공유경제는 혁신적인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지만, 기존의 세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경제가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이는 IT의 발달로 인한 혁신적인 경제활동에 관한 움직임이라는 것을 배척할 수 없다. 이에 새로운 경제활동으로서 공유경제가 가진 잠재력을 구현하기 위한 세제가 필요하다.

공유경제에 있어서 소득세 관련 쟁점은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소득 파악에 관한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개서비스회사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의 소득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세와 관련한 쟁점은 납세 의무자를 중개서비스회사와 서비스제공업체 중 과연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7월부터 국외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 사업자 또는 국내 소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전자적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소비세를 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공유경제와 관련한 법인세 쟁점은 외국법인인 중개서비스회사에 대해 적정한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이는 비단 공유경제에서의 문제점은 아니고 글로벌 경제하에서 전자상거래 등을 하는 외국법인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이다. 만일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갖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

▶ **주제어** : 공유경제, 제4차 산업혁명, 조세회피, 중개서비스회사, 조세법

## I. 서론

주지하다시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ICT)의 융합을 바탕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흐름은 인터넷 플랫폼(Internet platform)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 등을 나눠 쓰는 혁신적 경제 모델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sup>1)</sup> 공유경제를 쉽게 설명하자면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독특한 경제방식을 의미한다. 공유경제 체제하에서는 물품, 생산설비,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방식으로 ‘공유(sharing)’하여 소비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2)</sup>

이러한 공유경제는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주로 개인이 보유한 활용 가능한 자산 등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른 개인 등도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경제활동 전반을 의미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다.<sup>3)</sup> 공유경제에 관한 대표적인 플랫폼은 우버(Uber Technologies, 이하 ‘우버’로 지칭함)와 민박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 이하 ‘에어비앤비’로 지칭함) 등이 있다. 공유경제에서는 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sup>4)</sup>

1) Hang Sik Park, Technology convergence, open innovation, and dynamic economy, *Journal of Open Innovation : Technology, Market, and Complexity*, 2017, pp.1~2.

2) 이장우 외 3인, “공유경제 현황 및 시사점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15, 3~4면.

3) 민성희, “공유경제 비즈니스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산은조사월보』 제730호, KDB산업은행, 2016. 9., 27면.

4) 이남우, “공유경제 확산에 따른 융합 R&D 전략”, 『융합 Weekly TIP』 제100호, 융합연구정책센터, 2017. 12., 2~3면.

과거의 혁신적인 기술이 그래왔던 것처럼 공유경제의 등장은 우리 경제와 노동 시장 등에서의 기존의 제도와 충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혁신적 사업모델은 기존의 규제와 관련한 사각지대가 필연적으로 발생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우버 택시가 기존의 택시 사업자들과의 갈등을 표출하였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영업을 중단하였다.<sup>5)</sup> 이에 아직까지 공유경제가 도입되기 위해선 라이선스 기반의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 세금탈루,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의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

특히 공유경제와 관련한 조세회피 이슈는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유경제의 참여는 IT(information technology) 기기를 이용하여 여가시간을 이용해 부수입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라이드 쉐어링(ride sharing), 홈 쉐어링(home sharing) 작업 또는 그 밖의 다른 피투피(peer-to-peer network : P2P) 서비스를 통한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납세와 관련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된다. 중요한 점은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수입이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새로운 사업모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얻기 전에 인식해야 되는 납세의무와 함께 세무 신고서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인 상황을 방지해야 되는 사항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등장하게 된 공유경제의 과세 쟁점을 발굴하여 우리 세법과 해외 주요국의 세제 현황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에서 공유경제에 관한 세제 논의가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하여, 해외 주요국의 공유경제 과세 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이하 II.). 구체적으로 해외 주요국은 유럽 주요국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스웨덴의 제도와 미국과 캐나다의 제도를 분석한다. 이후 국내의 공유경제의 과세 방안으로서 소득세, 소비세, 법인

5) 우버의 택시(영업) 논란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택시 관련 여객운송 관련 법규나 규제의 강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택시사업이나 유상운송사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강상욱·서영욱·이민호, 『우버(Uber)의 출현과 택시시장의 변화』, 한국교통연구원, 2015, 28~29면.

세의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의 합리적인 공유경제 체제하에서의 과세 방안을 제시한다(Ⅲ.).

## Ⅱ . 해외 주요국의 공유경제 과세제도 분석

### 1. 공유경제의 개요

#### 가. 공유경제의 개념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방식을 의미한다. 즉, 물품·생산설비·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 소비를 의미하는 것이다.<sup>6)</sup> 이러한 공유경제는 상업경제(Commercial Economy)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미래에는 상업적 공유경제에서 나아가 협력적 공유경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7)</sup>

공유경제는 2008년에 처음 등장하였다.<sup>8)</sup> 이러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하여 소유자 입장에서는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구매자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유경제의 등장배경에는 사회의 특정 부문에서의 발전 또는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환경, 정보통신 환경, 인구·사회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9)</sup>

6) Cristiano Codagnone and Bertin Martens, *Scoping the Sharing Economy : Origins, Definitions, Impact and Regulatory Issues*, © European Union 2016, pp.4~5.

7) 주순식 외 3인, “공유경제와 합리적 규제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공유경제 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경쟁저널』 제191호, 법무법인 율촌, 2017. 5., 38면.

8) Lawrence Lessig,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Bloomsbury Academic, 2008, p.13.

9) 박문수,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업 성장전략』, 산업연구원, 2016. 12., 4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경제 기조가 지속되었고 중산층의 고용기회와 소득이 감소하면서 유희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sup>10)</sup> 이에 구매자는 과잉 소비를 자제하고 환경오염 방지, 작은 기업에 대한 지원, 지역 커뮤니티와의 소통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소비를 위해 공유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공유경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더욱 저렴하고 안전한 소비를 위해 발생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트렌드와칭(trend watching)은 2014년의 소비 키워드로 ‘죄책감 없는 소비(guilt free consumption)’를 소개하며 더 윤택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욕망이 소비에 반영되는 추세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sup>11)</sup> 주지하다시피 스마트폰(smart phone)과 소셜미디어(Social Media)가 대중화되면서 정보의 손쉬운 공유와 접근,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판 조회, 수요자와 공급자 간 소통이 자유롭게 공유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sup>12)</sup> 개인이 제공하는 합리적 가격대의 독특한 물건과 서비스가 기업이 대량 생산한 제품·서비스 보다 더욱 매력적이라고 인식하는 개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소비계층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 나. 공유경제의 시장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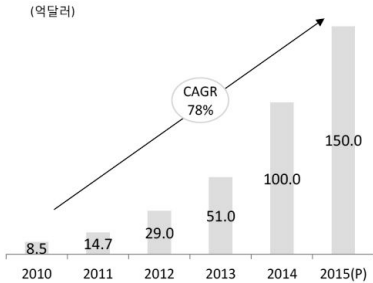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2010년 이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8%에 달하였다. 미국 공유경제 조사기관인 클라우드 컴퍼니(cloud company)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5년간 약 260억 달러가 공유경제 분야로 유입된 것으

~4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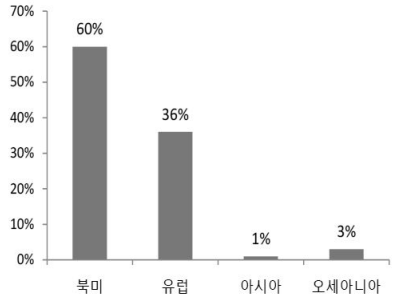
- 10) 김민정,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KDI FOCUS』 제83호, 한국개발연구원, 2017. 7., 1~2면.
- 11) 트렌드와칭, “GUILT-FREE CONSUMPTION”, <http://trendwatching.com/trends/guiltfreeconsumption/>(최종방문일 : 2018. 2. 28.).
- 12) 김주환,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확산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 최근 주요 논란”, 『KB 지식비타민』 17-66호, 2017. 8., 3면.

로 추정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에서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이다.

<그림 1>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



<그림 2> 대륙별 공유경제 비중



※ 자료 : PwC, “The Sharing Economy : Sizing the Revenue Opportunity”, 2014.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2013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 5개 주요 공유경제 분야의 잠재가치가 3,350억 달러로 약 20배 증가하여 전통적 대여시장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5개 공유경제 분야들은 P2P 펀딩 및 클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온라인 채용, 차량 및 교통수단 공유, 음악과 동영상 스트리밍, 숙박 공유 등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sup>13)</sup>

## 2. 해외 주요국의 공유경제의 과세 문제

### 가. EU의 주요국의 공유경제 과세 현황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로 지칭)는 이미 2016년 6월에 공유경제의 보급을 위한 지침서인 “A European agenda for the collaborative economy (공유경제를 위한 유럽 의제)”를 발표하였다.<sup>14)</sup> 이 지침에서는 과세에서의 쟁

13) 민상기, “숙박·카셰어링…공유경제 물꼬 튼다”, 『나라경제』 4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12면.

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U 주요국은 인터넷 플랫폼에서 거래 정보가 기록되고 추적되는 것을 이용하여 부과금의 축진과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sup>15)</sup> 다시 말해, 중개서비스회사, 과세 당국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세금 정보를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세무에 관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이다.

지침에 따르자면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중개서비스회사는 각국의 과세 당국의 세무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EU 주요국들은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내 과세 현황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회원국은 공유경제 대한 세제의 적용을 위하여 더욱 명확하게 제도를 계획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sup>16)</sup>

### (1) 프랑스(France)

#### (가) 전자적 소득신고

프랑스에서는 2016년 추경예산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Article 1649 quater A bis)에 의해 중개서비스회사는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를 과세 당국인 공공재무총국(La 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 : DGFIP)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sup>17)</sup> 제출 대상이 되는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의 성명, 연락처, 사업식별 등록번호(SIREN number), 거래에 의해 얻은 총소득 등이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전자적 방법에 의해 매년 자동으로 과세당국에 제출되며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통지된다. 또한 이 방식은 2019년 1월분 이후의 소득분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이와 같은 유예기간은 적용 시점까지 일정한 시간을 주어 사업자 측에 시스템 정비 등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함이다.

14) European Commission, *A European agenda for the collaborative economy*, COM(2016) 356 final, 2016. 6. 2., pp.13~15.

15) *Ibid.*, p.3.

16) *Ibid.*, p.5.

17) LOI n° 2016-1918 du 29 décembre 2016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16, Article 24.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중개서비스회사가 해외법인이거나 일부 회사에서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개별 거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때문에 어느 정도 과세 정보가 수집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목할 수 있다.

#### (나) 과세 당국의 직접 조사

프랑스 공공재무총국의 제도 중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제도는 바로 납세자 자신이나 타인에게 자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Droit de communication)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sup>18)</sup> 공공재무총국이 정보제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법원 등의 허가는 필요 없다고 한다. 공유경제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권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해당 권한의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행정기관인 ‘정보 처리 및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 CNIL)’의 감독하에 수행된다. 당해 조사 대상의 범위와 동기의 적합성에 일정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에 있어서는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sup>19)</sup>

## (2) 영국(The United Kingdom)

#### (가) 과세 당국의 직접 조사

영국에서는 공유경제 등의 새로운 경제활동과 국제적인 조세 회피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 HMRC)에 의한 정보 수집 권한의 강화정책이 진행 되고 있다.<sup>20)</sup> 영국 국세청은 2008년

18) Livre des procédures fiscales Article L81.

19) Loi n°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Article 27.

20) 영국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haring-economy->

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납세자 및 제3자에 대해 ‘정보요청통지(Information Notice)’를 요청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과세 현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sup>21)</sup>

이 제도는 영국 국세청은 사전에 조세심판소(Tax Tribunal)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제3자에게 불특정 납세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통지사항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과세 현황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납세자와 관련된 데이터의 소유자인 고용주 등에 데이터 요청 통지(Data-holder Notice)를 하고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sup>22)</sup>

#### (나) 새로운 공제방안의 창설 등

2017년 과세연도부터 개인의 사업소득(trade income)과 자산 소득(property income)에 대해 각 1,000파운드의 소득공제(allowance)가 신설되어 있다.<sup>23)</sup> 이러한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된 세제의 단순화를 통해 공유경제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각 소득이 1,000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납세는 불필요하다. 납세자는 각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1,000 파운드의 개산공제와 실액에 의한 비용의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공유제와 관련된 공제로 주거의 대출에 관한 공제(rent a room relief)가 있다.<sup>24)</sup> 이 제도는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7,500파운드의 개산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기의 공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user-characteristics-and-tax-reporting-behaviour(최종방문일 : 2018. 2. 28.).

21) Finance Act 2008 (c.9), Schedule 36.

22) Finance Act 2011 (c.11), Schedule 23.

23) 영국 국세청 홈페이지, HM Revenue & Customs, Income Tax : new tax allowance for property and trading income, 2016. 12. 5., <https://www.gov.uk/government/> (최종방문일 : 2018. 2. 28.).

24) CCH British Master Tax Guide 2016-17, CCH, 2016, p.274.

### (3) 기타 회원국

이탈리아(Italy)는 공유경제 규제와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이며 이 법안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과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sup>25)</sup> 다시 말해, 서비스 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신설된 소득구간을 적용하고, 1만 유로까지 10%의 원천징수를 부과하고, 1만 유로를 넘는 금액은 개인사업자에 의한 소득과 동률로 과세한다.<sup>26)</sup> 원천징수의무자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중개서비스회사이다. 만일 중개서비스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탈리아 국내에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조직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Estonia)는 2017년부터 우버가 운전자의 동의하에 그 운전자의 소득 정보를 에스토니아 국세청(Maksu-ja Tolliamet)의 제공에 관한 동의가 기입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sup>27)</sup> 과세 당국이 고용주 등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급여, 이자, 원천징수액, 각종 공제액 등을 신고서에 미리 기입하여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납세자의 세무 신고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도입되었다. 납세자는 동 신고서를 바탕으로 미기입의 사업 소득, 국외 소득 등을 기입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스웨덴(Sweden)은 2017년부터 우버를 포함한 모든 택시 사업자의 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고 제도를 도입하였다.<sup>28)</sup> 구체적으로는 각 운

25) 이탈리아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 공유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규율과 경제 공유 촉진을 위한 법률(Disciplina delle piattaforme digitali per la condivisione di beni e servizi e disposizioni per la promozione dell'economia della condivisione)의 제5조(L'articolo 5)에서 규정하고 있다[<http://www.camera.it/leg17/126?tab=1&leg=17&idDocumento=3564>](최종방문일 : 2018. 2. 28.).

26) Disciplina delle piattaforme digitali per la condivisione di beni e servizi e disposizioni per la promozione dell'economia della condivisione L'articolo 5.

27) 에스토니아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emta.ee/et/registreerimine-ettevotlus/ fuusilisest-isikust-ettevotjale-fie/kasulik-teave/uber-voi-taxify> (최종방문일 : 2018. 2. 28.).

전자가 민간보고센터에 승무정보를 보고하고, 스웨덴 국세청(Skatteverket)이 보고센터에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센터는 정보 제공해야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 나. 미국(The U.S.)과 캐나다(Canada)의 공유경제 과세 현황

### (1) 미국의 공유경제 과세 현황

#### (가) 중개서비스회사의 자발적 정보 제공

미국은 공유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존의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등의 규정에 따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식자료를 마련하여 대응방안을 구축하였다. 미국의 지불결제기관은 카드의 결제거래 및 다른 회사의 네트워크 거래인인 제3자에 의한 지불된 내용이 네트워크를 통한 결제에 해당한다면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 IRS)에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된다(26 USC § 6050).<sup>29)</sup> 지불결제 기관 중 타사 네트워크 거래에서의 수익자는 바로 계약상의 지급 의무기관인 타사 결제기관이다. 이에 중개서비스회사인 우버와 에어비앤드는 서비스 이용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 거래의 일반적인 예이다.

이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Instructions for Form 1099-K(이하 ‘양식 1099-K’로 지칭)이다.<sup>30)</sup> 카드결제 거래의 경우 모든 타사 네트워크 거래가 연간 거

28) 스웨덴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skatteverket.se/omoss/press/pressmeddelanden/2017/2017/vanligtmedoredoavisadeinkomsterblandforaresomkordeforuberpop.5.5c281c7015abec2e20100eb.html>(최종방문일 : 2018. 2. 28.).

29) 이 규정은 카드결제 거래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의 과소 신고를 억제하고 세무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에 주택 및 경제회복법(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of 2008, Pub. L. No.110-289, 122 Stat. 2908)에 의해 도입되었다. 또한 이 규정은 납세자가 적정하게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30) 미국 국세청, Instructions for Form 1099-K, 2017. 11. 15., <https://www.irs.gov/pub/>

래 횟수가 200회, 거래 총액이 2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게 되면 보고 대상이다. 보고해야 되는 정보는 수취인의 성명, 주소, 납세자 번호, 지불 총액이다. 지불 결제 기관은 보고대상 거래에 대하여 Instructions for Form 1099-K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수취인에 통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신고서로 양식 1099-MISC가 있다.<sup>31)</sup> 납세자는 과세 연도에 비법인(개인)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의 기타소득(miscellaneous income)을 지불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비슷한 방식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보고대상은 10달러 이상의 로열티(royalty) 등의 지불과 600달러 이상의 사업 및 거래 관련 임대료 용역의 대가 상여금 등의 지급이다.

그러나 이 조건에 해당하는 지불을 행하더라도, 양식 1099-K의 보고 대상이 되는 급여 내용은 양식 1099-MISC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양식 1099-MISC에서 기입해야 하는 사항은 양식 1099-K와 유사하며, 그 내용은 수취인에게 통지된다. 이에 현재 공유경제에 대한 대응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즉, 2015년 현재 서비스 제공자 중 양식 1099-K와 양식 1099-MISC를 보고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 업체의 60%에 불과하며, 아직 파악되지 않은 소득이 거액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sup>32)</sup>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면제규정 때문이다. 타사 네트워크 거래의 경우 그 횟수와 금액이 양식 1099-K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양식 1099-K와 양식 1099-MISC 중 신고의무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면제 규정이 세제의 사각지대(loop-hole)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면제 규정을 재검토를 요구하는 견해도 있다.<sup>33)</sup>

[irs-pdf/i1099k.pdf](#)(최종방문일 : 2018. 2. 28.).

31) 미국 국세청, Instructions for Form 1099-K, 2017. 11. 15., <https://www.irs.gov/pub/irs-pdf/f1099msc.pdf>(최종방문일 : 2018. 2. 28.).

32) 2016년 5월 24일 하원 의원의 제114회 중소기업위원회 공청회 자료, <https://www.gpo.gov/fdsys/pkg/CHRG-114hhr20199/pdf/CHRG-114hhr20199.pdf>(최종방문일 : 2018. 2. 28.).

33)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Laura Saunders, The Blind Spot in a

## (나) 과세 당국에 의한 질문 조사

미국 국세청은 신고서 확인 및 무신고자의 신고서 작성을 요청하기 위해 납세자 및 제3자에게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청취조사를 할수 있음은 물론 소환장(Summons)을 발송하여 출두 후 조사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sup>34)</sup> 이러한 소환장은 조사 대상 납세자를 식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수취인 불특정 소환장을 발송할 수 있으며, 이를 포괄적 정보제출명령 제도(John Doe Summons)라고 한다.<sup>35)</sup> 이 제도는 공유경제 관련 소득 파악을 목적으로 활용된 적은 없지만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다)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신고 납세

서비스 제공자는 공유경제 거래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양식 1099-K 등으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 확정신고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국 국세청은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확정신고 등 세무 관련 웹사이트인 “Sharing Economy

---

Sharing Economy : Tax Collection : some gig-economy workers are using a loophole to cheat Uncle Sam ; others are bewildered by tax requirements, 2017. 5. 19., <https://www.wsj.com/articles/the-blind-spot-in-a-sharing-economy-tax-collection-1495186206>(최종방문일 : 2018. 2. 28.).

34)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소정의 일시 및 장소에 요청된 장부 또는 기록을 가지고 출두하여 선서 후 증언하라는 소환장(Summons)을 보내어 출석을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26 USC § 7602 (a) (2)]. 그러나 국세청은 소환장(Summons)를 단순히 보내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집행을 강제하거나 법원의 판단 없이 처벌할 권한이 없다. 윤대진, “미 연방국세청의 조세사범 수사제도 연구”,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7집, 법무연수원, 2012, 331면.

35) 26 USC § 7609 (f)에 따르면 포괄적 정보제출명령 제도(John Doe Summons)의 구체적 요건은 첫째, 특정인이나 집단 등에 관한 조사할 것, 둘째, 특정인이나 집단 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할 것, 셋째, 검사를 통해 입수하려고 했던 정보를 다른 정보원(情報源)에서 쉽게 얻을 수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재판 절차에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입증한 후 소환장(Summons)을 발송할 수 있다.

Tax Center”를 개설하였다.<sup>36)</sup> 이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자가 적용되는 소득 공제(deduction)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첫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행 거리 1마일당 53.5센트의 표준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sup>37)</sup> 둘째, 개인주택의 대출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 대출 수익금 등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셋째,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 수익금에 개인과 대출의 기간에 따라 비용의 공제 등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한다.

## (2) 캐나다의 공유경제 과세 현황

캐나다에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세제 대책에 관한 논의는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 CRA)은 납세자 및 제3자에게 현장으로 찾아가 청취조사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sup>38)</sup> 이에 따라 공유경제 대해 일정한 대응이 가능하다.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캐나다 국세청은 소정의 요건을 충족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3자에게 불특정 조사 대상자에 대한 거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sup>39)</sup>

---

36) Sharing Economy Tax Center,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haring-economy-tax-center>(최종방문일 : 2018. 2. 28.).

37) 납세자의 신고구분(독신, 부부 합산 등)마다 설치된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개선공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납세자는 표준 공제이며 일정한 비용의 실액 공제이다. 이는 항목별 공제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2017 Standard Mileage Rates for Business, Medical and Moving Announced, <https://www.irs.gov/newsroom/2017-standard-mileage-rates-for-business-and-medical-and-moving-announced>(최종방문일 : 2018. 2. 28.).

38)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programs/about-canada-revenue-agency-cra/compliance/sharing-economy.html>(최종방문일 : 2018. 2. 28.).

39)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newsroom/tax-tips/tax-tips-2017/involved-sharing-economy-know-your-tax-obligations.html>(최종방문일 : 2018. 2. 28.).

### Ⅲ. 우리나라에서의 공유경제 과세 방향

#### 1. 공유경제와 세제 문제

##### 가. 소득세 관련 쟁점

소득세의 관점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사업자이거나 중개서비스회사의 피용자인지 여부에 관한 기초적인 문제가 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의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이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납세 의무자로서 세금을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만일 중개서비스회사의 근로자인 경우의 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중개서비스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비단 공유경제와 관련한 것은 아니고 소득세법에서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다(소득세법 제2조 제1항).

그리하여 공유경제와 관련 소득세 관련 논점을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소득 파악에 관한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개서비스회사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의 소득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만일 서비스 제공자가 중개서비스회사에 가입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의무화하여 과세 당국이 중개서비스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소득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중개서비스회사에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원천 징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sup>40)</sup>

둘째는, 소득의 분류와 관련한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

40) 사실 중개서비스회사는 거래의 내용과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득의 소득계산에서의 공제 여부와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구분에 관한 것이다. 근로소득은 소득계산상 공제 급여를 위해 소득공제에 의한 필요경비 개선공제를 적용해야 한다(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sup>41)</sup> 근로소득과 다르게 사업소득은 소득계산에서의 공제로서 필요경비의 실액에 대한 공제가 인정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대부분은 노동자적이고,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의 대부분은 소득계산에서의 공제를 한다면 근로소득자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시대에서의 소득세 개혁 방향으로서 근무 형태의 다양화 등을 감안한 제반 소득공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근로자성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소득계산상 공제 측면에서 근로소득자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sup>42)</sup> 다시 말해, 현행 과세방식이 일하는 방법에 따라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하

41) 필요경비 개선공제란 소득금액 계산상 수입 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실제금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산의 간편화라는 견지에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필요경비 개선공제의 예로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최종방문일 : 2018. 2. 28.).

42)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 29736 판결.

여 근로소득 공제 등의 소득계산에서의 공제와 기초공제 등의 인적공제에 관하여 소득계산에서의 공제를 축소하고, 기초공제를 확대하는 것 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욱 과감한 개혁을 바탕으로 한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의 통합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sup>43)</sup>

셋째는,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구분에 관한 문제이다. 소득세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행위로 인한 소득은 경제활동의 규모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21조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히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의 계산에서 발생한 손실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다.<sup>44)</sup> 그러나 기타소득에서는 이러한 조치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공유경제 체제하에서 중개서비스회사를 통해 얻은 소득이 소액이고, 부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개서비스회사가 얻게 된 소득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하기 위해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과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 나. 소비세 관련 쟁점

공유경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원칙적 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에 소비세의 납세 의무자를 중개서비스회사와 서비스제공업체 중 어느 쪽으로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것은 중개서비스회사가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중인 경우에도 문제되는 사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7월부터 국외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 사업자 또는 국내 소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전자적 용역의 제공에 관한 소비세를 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

43) 정원호,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18면.

44)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1520, 판결.

어 있다.<sup>45)</sup>

구체적으로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사업자 거래는 국내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 소비자와의 거래는 해외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다. 중개서비스회사는 해외 사업자이며, 중개하는 서비스 전체가 국내 사업자 또는 국내 소비자와의 거래를 진행할 경우에는 서비스 전체에 대한 소비세가 부과되므로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sup>46)</sup>

한편, 기존의 동업자의 대부분이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공정한 경쟁 조건이 확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도 중개서비스회사에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

#### 다. 법인세 관련 쟁점

공유경제와 관련한 법인세 쟁점은 외국법인인 중개서비스회사에 대한 적정한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이는 비단 공유경제에서의 문제점은 아니고 글로벌 경제하에서 전자상거래 등을 행하는 외국법인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과세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 PE)을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등에 대한 과세 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갖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sup>47)</sup>

45)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 2.

46) 국세청 홈페이지,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ab/a/d/UTEABADA01.xml>(최종방문일 : 2018. 2. 28.).

47) 이경근, “OECD의 고정사업장 판정기준 변경이 우리나라 법원의 향후 판결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세무와 회계 연구』 제4권 제2호, 한국조세연구소, 2015, 43면.

한편, 고정사업장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자산의 소유에 따른 소득 등의 일부만이 과세대상이 되고,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의 유무에 따른 과세에 관한 취급은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과세가 없다는 국제적인 과세원칙이 적용된다.<sup>48)</sup> 고정사업장에 대한 전형적인 논점의 하나가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창고 취급이다.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라 현재는 제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창고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외국법인이 고객의 거주 국가에 창고만을 보유하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에 충분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된다.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중개서비스회사는 외국법인으로서 고객의 소재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지점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중개서비스회사의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적정하게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실 고정사업장을 둘러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로 지칭) 프로젝트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sup>49)</sup> 이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에서는 인위적인 고정사업장 인증 회피의 내용인 ACTION 7을 제시하여 고정사업장 인증을 인위적으로 방지하고 세금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sup>50)</sup> 구체적으로는 고정사업장의 정의 및 범위에 관한 국제기준인 OECD(Organization for

48) 홍성훈, 『고정사업장이 만일 없다면 과세가 없다는 국제적인 과세 원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2., 20~21면.

49)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 침식과 이익 이전)는 다국적 기업이 국제세제의 간극을 찢어 세금 부담을 경감·회피하는 행위나 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말한다. BEPS 프로젝트는 OECD와 G20이 협력하여 진행 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국제과세의 규칙을 검토하였다. 2015년 10월에 공표한 최종 보고서에서는 BEPS에 대비하며 15가지 행동항목을 제시하였다. BEPS Actions, <http://www.oecd.org/tax/beps/beps-actions.htm>(최종방문일 : 2018. 2. 28.).

5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 관련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2016. 9., 1~2면.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모델조세협약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하고 있다. 위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ACTION 7이 유효한 해결책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sup>51)</sup>

그런데 ACTION 7은 물리적 거점(nexus)의 유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기존의 고정사업장의 존재에 관하여 연장선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사업에서 고객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물리적 거점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BEPS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대규모 전자상거래를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기준이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중요한 경제 거점)에 근거 과세이다.<sup>52)</sup>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는 기존의 고정사업장의 개념이 소재국(원천지국)에 물리적 거점을 요구하는 반면, 전자적인 거점으로서 예를 들어, 로컬 도메인(local domain)명, 수집된 데이터양 등으로서의 특징을 충분히 갖고 있으며, 일정한 매출실적이 있다면 그러한 거점에 귀속되는 사업소득 등에 대한 과세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최종 보고서는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를 권고로 채택하는 것은 보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검토하기로 되어 있다.<sup>53)</sup> 그 이유는 다른 BEPS 최종 보고서의 권고내용이 전자상거래의 BEPS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인증요건의 설정 및 귀속소득의 산정이 곤란하다는 점 등이다. 또한 경제의 향후 발전이 국제 과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020년까지 그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예정이 되어있다.<sup>54)</sup>

해외 법인인 중개서비스회사에 대한 법인 과세는 현재의 BEPS 프로젝트

5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앞의 책, 5면.

52) 외교부, “디지털경제하에서의 조세문제 대응방안 논의”, 2014. 5., 2면.

53) OECD, Explanatory Statemen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p.8.

54) 기획재정부,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 I )”, 2015년 11월 19일자 보도 자료.

의 권고 내용을 실행함으로써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의 인터넷 플랫폼의 체계상 중개서비스회사가 고객의 거주 국가에서의 물리적 거점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권고에 의한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Significant Economic Presence의 도입을 포함한 검토가 필요하다.<sup>55)</sup>

## 2. 공유경제 과세 방안의 확립 방안

### 가. 혁신적 경제활동의 적응과 대응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주요국에서도 공유경제의 확산이 빠른 대도시 숙박, 교통 분야에서 공유경제 기업에 대한 공정성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공유경제의 공정성 논쟁의 핵심은 공유경제 기업의 탈세 여부 등 기존의 세법의 준수 여부이다. 공유경제가 먼저 도입된 국가에서는 기존의 업을 영위해 오던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소 또는 고발 등이 이루어졌다.

이에 공유경제의 성공적인 경제적 모형이 제도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 필요하다. 그리하여 새로운 경제활동으로서 공유경제가 가진 잠재력을 구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2000대 초 인터넷상거래 도입 초기 이베이(e-Bay), 아마존(Amazon)의 급성장 이후 이들 기업의 합법화 범위에 대한 논의와 세금 등에 대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듯이 공유경제에 대한 제도 정비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유경제의 확대는 기존 사업과 마찰을 빚고 그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예를 들어, 우버의 경우 기존의 대중교통 서비스와 강력하게 충돌하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가 우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면서 철수하였다. 그리고 숙박·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수요자들의 90%가 호텔이나 택시 등 기존 서비스 이용을 줄였다고 응답했으며, 금융공유에서도 크라우드펀딩에 참가한 투자자의 60%가 다른

55) 외교부, 앞의 논문.

금융수단에 대한 투자금액을 줄였다고 한다.<sup>56)</sup>

그러나 공유경제가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이는 IT의 발달로 인한 혁신적 경제활동의 움직임에 배척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공급자를 사회적 배려대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 공급자와 공유경제 공급자 간에 불평등한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전체 시장의 질적 하락을 유발시키게 되어 국민의 삶을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 나. 혁신적 경제활동의 세제 방안 확립

우버와 에어비엔비는 차량공급업자 또는 숙박공급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제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러한 불공평한 규제에 인하여 공유경제 공급자는 세제차익을 보고 이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왜곡된 현상이 지속된다면 공유경제의 질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공급자의 거래량이 일정액의 한도 이하일 경우 비교적 낮은 규제를 적용하는 거래량 연동규제는 숙박업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도입되고 있다.<sup>57)</sup> 대표적으로 네덜란드(Netherlands) 암스테르담(Amsterdam)이 숙소 임대 기간에 따라 등록제와 허가제를 병행하는 것과 미국 산타모니카(Santa Monica)와 영국이 공급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sup>58)</sup> 공유경제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 의한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거래 이후 조세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실 우버와 에어비엔비 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은 기존 사업자들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사업들의 금지 또는 제한되는 필요성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사업에 대한 역차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

56) 김민정, 앞의 논문, 4면.

57) 김민정, 위의 논문, 7면.

58) 김주환, 앞의 논문, 10면.

은 동등 규제를 요청하는 입장은 동등 서비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유경제에서의 사업 모델은 기존 사업 모델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면, 공유경제에서의 사업 모델 중 상당수는 상시적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통적 방식의 공급자 규제 또는 진입 규제와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세제방안도 혁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유경제 사업 모델이 국가경제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며, 세제에 있어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표출된 상황만으로는 공유경제의 부작용이 그로 인한 이익을 훨씬 상회한다거나 공유경제 사업 모델 자체를 부정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금은 공유경제 사업모델 활성화가 더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공유경제 사업 모델에 수반되는 부작용은 그에 관한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다.



## IV. 결 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한 공유경제는 혁신적인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지만, 기존의 세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가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이는 IT의 발달로 인한 혁신적인 경제활동에 관한 움직임을 배척할 수 없다. 이에 공유경제를 성공적인 경제적 모델로서 자리 잡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경제활동으로서 공유경제가 가진 잠재력을 구현하기 위한 세제가 필요하다.

앞서 검토한 프랑스의 공공재무총국의 세제는 중개서비스회사에 대한 과세 당국에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 사례 등을 주목할 수 있다. 또한 과세당국의 질문 조사권도 공유제에 대한 적정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이 공유경제를 둘러싼 과세상의 문제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세 방식과 중개서비스회사에 대한 과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세 방식이 문제되며, 법인세는 중개서비스회사에 대한 과세 방식 그리고 소비세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세 방식과 중개서비스회사에 대한 과세 방식과 관련된다.

공유경제에 있어서 소득세 관련 쟁점은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소득 파악에 관한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개서비스회사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의 소득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서비스 제공자가 중개서비스회사에 가입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의무화하여 과세 당국이 중개서비스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소득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중개서비스회사에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 공제 등의 소득계산에서의 공제와 기초공제 등의 인적공제에 관하여 소득계산에서의 공제를 축소하고 기초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세와 관련한 쟁점은 납세 의무자를 중개서비스회사와 서비스 제공업체 중 어느 쪽으로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것은 중개서비스회사가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중인 경우에도 문제되는 사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7월부터 국외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 사업자 또는 국내 소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전자적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소비세를 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이에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도 중개서비스회사에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공유경제와 관련한 법인세 쟁점은 외국법인인 중개서비스회사에 대해 적정한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이는 비단 공유경제에서의 문제점은 아니고 글로벌 경제하에서 전자상거래 등을 하는 외국법인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등에 대한 과세 방법이 다르다. 만일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갖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

## 參 考 文 獻

### 1. 국내 문헌

- 강상욱 · 서영욱 · 이민호, 『우버(Uber)의 출현과 택시시장의 변화』, 한국교통연구원, 2015.
- 기획재정부,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 I )”, 2015년 11월 19일자 보도자료.
- 김민정,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KDI FOCUS』 제83호, 한국개발연구원, 2017. 7.
- 김주환,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확산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 최근 주요 논란”, 『KB 지식비타민』 17-66호, 2017. 8.
- 민상기, “숙박·카셰어링…공유경제 물꼬 튼다”, 『나라경제』 4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6.
- 민성희, “공유경제 비즈니스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산은조사월보』 제730호, KDB산업은행, 2016. 9.
- 박문수,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업 성장전략』, 산업연구원, 2016. 12.
- 외교부, “디지털경제하에서의 조세문제 대응방안 논의”, 2014. 5.
- 윤대진, “미 연방국세청의 조세사범 수사제도 연구”, 『국의훈련검사 연구논문집』 제27집, 법무연수원, 2012.
- 이경근, “OECD의 고정사업장 판정기준 변경이 우리나라 법원의 향후 판결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세무와 회계 연구』 제4권 제2호, 한국조세연구소, 2015.
- 이남우, “공유경제 확산에 따른 융합 R&D 전략”, 『융합 Weekly TIP』 제100호, 융합연구정책센터, 2017. 12.
- 이장우 외 3인, “공유경제 현황 및 시사점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15.
- 정원호,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 주순식 외, “공유경제와 합리적 규제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공유경제 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산업과 경쟁』, 법무법인 율촌, 2017. 5.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 관련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2016. 9.

홍성훈, 『고정사업장이 만일 없다면 과세가 없다는 국제적인 과세 원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12.

## 2. 국외 문헌

CCH British Master Tax Guide 2016-17, CCH, 2016.

Cristiano Codagnone and Bertin Martens, *Scoping the Sharing Economy : Origins, Definitions, Impact and Regulatory Issues*, © European Union 2016.

European Commission, *A European agenda for the collaborative economy*, COM (2016) 356 final, 2016. 6. 2.

Hang Sik Park, Technology convergence, open innovation, and dynamic economy, *Journal of Open Innovation : Technology, Market, and Complexity*, 2017.

Lawrence Lessig,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Bloomsbury Academic, 2008.

OECD, Explanatory Statemen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2015.

## &lt;Abstract&gt;

**A Study on the Tax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With a Focus on Analysis of Taxation Problem**  
**with a Sharing Economy —**

Lee, Chang Kyu\*

The sharing economy is an economic model often defined as a peer-to-peer(P2P) based activity of acquiring, providing or sharing access to goods and services that are facilitated by a community based on-line platform. A shared economy can make personal assets or things available to others using the Internet platform. These shared economies can not avoid conflicts with existing economic institutions.

The shared economy that appeared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an innovative economic activity. The development of these innovative technologies can enrich people's lives, but problem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al tax laws can arise. As a new economic activity a legal system is needed that can take advantage of the shared economy.

Income tax related issues in the shared economy concern income grasp of intermediary service provid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that requests the intermediary service company to provide income information of the consumer's provider. And the issue related to consumption tax is whether to be a brokerage service company or a service provider of a taxpayer. In Korea a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which overseas operators have already imposed a consumption tax on the provision of electronic services such as the Internet from 2015.

The question of corporation tax related to the shared economy is whether or not it can reproduce the appropriate corporate tax for a brokerage service company that is a foreign corporation. This is a general matter related to a foreign corporation that conducts electronic commerce etc. If a foreign corporation has a permanent establishment, income is taxable.

---

\* S.J.D., Research Fellow of Kyung He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ey Words** : shared econom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ax avoidance, brokerage services company, taxation law